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로 구체화 함

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확대(안 제9조의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특허취소신청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작성 지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다. 우수 발명품 홍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발명품의 홍보지원을 원하는 자는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공익성 및 홍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업무의 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무발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제8조의6을 제8조의7로 하고,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①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무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

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9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관련 서류작성 지원

제9조의9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제9조의9제2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제9조의9제2항제5호(중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제9조의11제2호 중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10까지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발명품 홍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실적 및 계획

3. 법 제39조에 따른 특허청장 추천서 또는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익성, 홍보 기대효과 등  
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  
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②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①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 청구관련 서류작성 지원

② -----  
-----  
-----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 및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신 설>

<신 설>

<신 설>

2. 제1호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③ (생략)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2.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제1호 내지 제4호-----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  
-----  
-----  
-----  
-----.

1. (현행과 같음)
2.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 (생략)

제19조의3 (생략)

<신설>

제19조의4 ~ 제19조의9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 (현행 제19조의3과 같음)

제19조의3(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① 법 제39조의2에 따른 발명품 홍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 설명서
  2. 특허기술 사업화 실적 및 계획
  3. 법 제39조에 따른 특허청장 추천서 또는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익성, 홍보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명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 ~ 제19조의10 (현행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9까지)

<p>제29조(업무의 위탁) ①특허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p>② (생략)</p>	<p>와 같음)</p> <p>제29조(업무의 위탁)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39조의2에 따른 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u></p> <p>②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481-8180